

초등교원 해임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누○○○○○[2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심] 2024. 2. 28. 항소취하	비고	[1심] 2023. 9. 7. 원고패 [2심] 2024. 2. 28. 항소취하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2022. 5. 24. 8:20경부터 8:50경까지 □□□□초등학교 본관 내 과학실에서 자원봉사를 위해 학교에 방문하여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 2022. 11. 8.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재단 소속 강사 및 대학생들이 2022. 5. 24.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목공체험교실 수업진행을 위해 방문하였고, 원고는 과학실을 피해자와 함께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커피를 타는 것을 도와달라며 함께 탕비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을 수차례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음. 이에 괜찮다며 거절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는 등 총 3회에 걸친 추행으로, 인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2. 8. 31. '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통보받음. ○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성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임용 후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직생활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위, 유사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성비위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원고는 더 이상 교사로 재임용될 수 없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원고의 비위 유형은 '7. 품위 유지의무 위반, 마. 성폭력'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p>이러한 경우에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또는 '해임'임.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범죄는 비록 법정형이 높지 않더라도 가벼운 비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의 필요성,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킴. ○ 원고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p>결 론</p>	<p>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p>